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5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강 서 구 청 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원도심 활성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민선 제8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확보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1) 정원의 총수: 1,743명 ⇒ 1,749명(증 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06명 ⇒ 1,705명(감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 45명(증 7명)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3)

○ 정원 총계 : 1,743명 ⇒ 1,749명(증 6명)

○ 일반직 계: 1,736명 ⇒ 1,742명(증 6명)

- 5급 : 75명 ⇒ 76명 (증 1명)

- 6급 이하 : 1,651명 ⇒ 1,656명(증 5명)

나. 원활한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및 정원조정  
(안 제5조 관련 별표 4)

○ (기존) 2023년 6월30일 → (변경) 2026년 6월30일

○ (기존) 6급이하: 5명 → (변경) 6급이하: 8명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입법예고(2022. 10. 13. ~ 2022. 10. 24.) 결과: 의견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증 6명

- 의견제출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2) 규제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43명”에서 “1,749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6명”에서 “1,705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8명”에서 “45명”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b>총 계</b>	<b>1,749</b>				
<b>정무직 계</b>	<b>1</b>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1,742</b>				
2급	1	1			
4급	8	6	1	1	
5급	<b>76</b>	<b>40</b>	3	13	20
6급 이하 소계	<b>1,656</b>				
전문경력관 소계	1				
<b>별정직 계</b>	<b>6</b>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5				

비고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단, 6급은 일반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5조 관련)**

관리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계				9	
본청	신청사건팀 추진단	일반직	5급	1	2026년 6월 30일까지
			6급 이하	8	

# 신 · 구정원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b>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b>						[별표 3] <b>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b>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b>총 계</b>	1,743					<b>총 계</b>	1,749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1,736</b>					<b>일반직 계</b>	<b>1,742</b>				
2급	1	1				2급	1	1			
4급	8	6	1	1		4급	8	6	1	1	
5급	75	39	3	13	20	5급	76	40	3	13	20
6급 이하 소계	1,651					6급 이하 소계	1,656				
전문경력관 소계	1					전문경력관 소계	1				
<b>별정직 계</b>	<b>6</b>					<b>별정직 계</b>	<b>6</b>				
5급상당	1	1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5					6급상당 이하 소계	5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4]

(현 행)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5조 관련)

관리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계				6	
본청	신청사건팀 추진단	일반직	5급	1	2023년 6월 30일까지
			6급 이하	5	

(개정안)

관리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계				9	
본청	신청사건팀 추진단	일반직	5급	1	2026년 6월 30일까지
			6급 이하	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세출예산 순증(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여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348,942	354,874	360,907	367,042	373,282	1,805,047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비용	산출내역	비고
(합계)	348,942천원		
7 급	348,942천원	58,157천원 × 6명	7급 14호봉 기준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자체수입	348,942	354,874	360,907	367,042	373,282	1,805,047

6. 작성자 : 행정지원과 남명훈(☎ 2600-6034)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46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10.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원도심 활성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민선 제8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확보(안 제3조 관련 별표3)

- 일반직 계: 1,736명(변동없음)

- 5급 : 75명 ⇒ 76명 (증 1)

- 6급 이하 : 1,651명 ⇒ 1,650명(감 1)

나. 원활한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및 정원조정 (안 제5조 관련 별표 4)

- (기존) 2023년 6월30일 → (변경) 2026년 6월30일

- (기존) 6급이하: 5명 → (변경) 6급이하: 8명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48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남명훈	전화번호	02-2600-603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안소현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10월 2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10월 24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0월 25일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